

전주성심여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주요 내용(2021)

제16조(교내생활 일반) 질서 있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지킨다.

1. 등교할 때는 중앙 현관을 통해 교실로 입실한다.
2. 등교 후 외출할 때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외출증을 발급받아 외출한다.
3. 학교의 담을 넘어 출입하지 않는다.
4. 등하교 혹은 외출 시에는 실내화를 신지 않고, 실내에서는 실외화를 신지 않는다.
5.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에 급식실에서는 급식실 규칙을 지킨다.
6. 면학당에서는 면학 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면학당 옆 복도는 이용하지 않는다.
8. 수업 중에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는다.
9. 컴퓨터 및 기자재는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0. 외부 음식을 교내로 배달받지 않는다.
11. 교내에서는 라면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17조(용모)

- ① 용모에 대한 규정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② 본교 학생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교복에 어울리는 용의 복장을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⑤ 복장은 각 호에 따른다.
 1. 교복과 생활복은 각 계절에 맞춰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한다.
 2. 등하교 시에는 교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한다.
 3. 교복에는 타이와 뱃지를 착용한다.
 4. 교복, 생활복, 체육복은 원래 형태를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는다.
 5. 교복 치마 안에는 다른 바지를 입지 않는다.
 6. 하복 상의 안에는 긴팔 옷을 입지 않는다.
 7. 교내에서는 교복 및 생활복과 함께 체육복 바지까지 착용할 수 있다.
 8. 체육복은 체육시간과 전후 1시간까지만 착용한다.
 9. 외투는 계절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하되, 교복이나 생활복 착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착용하고, 맨투맨 티셔츠는 입지 않는다. 교복과 함께 제작된 가디건 착용을 권장한다.
 10. 양말과 스타킹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11. 등하교 시 신발은 활동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한다.(슬리퍼와 성인용 힐 금지)
 12. 등하교 시에는 책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
- ⑥ 두발과 화장은 각 호에 따른다.
 1. 파마는 자연스러운 C컬과 S컬은 허용한다.
 2. 염색은 갈색만 허용하고, 탈색은 금지한다.
 3. 화장은 색조 화장은 금지한다.
- ⑦ 일과 중에는 미용용 도구를 사용하거나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 ⑧ 문신(타투), 피어싱 등과 같이 건강에 해를 주는 미용은 하지 않는다.
- ⑨ 헤어롤은 수업 중이나 교실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⑩ 담요는 교실에서 무릎을 덮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몸에 두르지 않기)

< 학교생활규정 요약 (위반할 경우 지도 항목) >

항목	번호	학교생활규정 위반한 경우 요약	비고
1.준법	1	듣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경우 특히, 학생회 학생에게 한 경우(SNS 포함)	
	2	면학당에서 소란스러운 행위로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3	면학당 옆 길을 통해 매점을 이용하는 경우	
	4	등교 시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	일과 중 교문을 무단출입한 경우	
	6	일과 중 담을 넘는 경우	
	7	실내화를 신고 교외로 출입하는 경우	
	8	일과 중 실내에서 실외화를 착용한 경우	
	9	수업 중 이어폰을 착용한 경우	
	10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11	외부 음식을 교내로 배달 받는 경우	
	12	교내에서 라면을 섭취하는 경우	
	13	학교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2. 용모	14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등하교 시 및 교내생활 중)	
	15	타이, 뱃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6	교복, 생활복, 체육복의 원래 형태를 과도하게 변형시킨 경우	
	17	교복 치마 안에 다른 바지를 입은 경우	
	18	하복 상의 안에 긴팔 옷을 입은 경우	
	19	외투로 앞이 막힌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경우	
	20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수업시간 전후 1시간만 허용)한 경우	
	21	색조 화장을 한 경우	
	22	갈색 이외의 염색을 한 경우	
	23	자연스러운 S컬이나 C컬 이외의 파마를 한 경우	
	24	네일 아트를 한 경우	
	25	피어싱이나 타투를 한 경우	
	26	가방이 없거나 책을 넣을 수 없는 가방을 착용한 경우	
	27	활동에 불편한 성인용 힐을 신은 경우	
	28	담요를 몸에 두르는 경우	
	29	수업 중이나 교실 밖에서 헤어롤을 착용한 경우	
	30	일과 중 미용 도구를 사용하거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경우	
	31	미용용 전열 기구를 교내로 반입하는 경우	

< 학교생활규정 위반 시 지도방법 요약 >

지도 받은 횟수	지도 단계	지도방법	지도책임	소관부서
5번	1단계	1차 상담	담임 (학생인성인권부에서 연락)	담임
10번	2단계	학부모 통지 및 면담 성찰의 글과 지벌(2시간)	학부모 통지 및 면담(담임) 성찰의 글과 지벌 (학생인성인권부)	담임 학생인성인권부
15번	3단계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 (학교징계규정에 따름)	성찰의 글, 지벌, 교내봉사 (학생인성인권부) 학교장 상담(학교장)	학교소위원회 학생인성인권부 학교장
20번 이상	4단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징계규정에 따름)	학생인성인권부	학생인성인권부